

안전이 필요한 모든 곳에,

AI 안전비서 **세이프버디**

주식회사 새임 | 서비스 소개서



SAFE
BUDDY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가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AI 솔루션**

안전이 필요한 모든 곳에,

AI 안전비서 세이프버디  SAFE
BUDDY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근로자·고객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경영주 처벌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사고사망자 전년대비 7% 감소
기관별 다양한 지침·매뉴얼 등 배포되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전히, **상식**으로만 여겨지는 **안전한 사업장**에 대한 인식



경찰,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추락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



열사병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첫 기소사례



사업주 Duties of Safety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안전관리자 고용의무가 없는,
안전지식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적법한 기준과 시스템에 따라,
직원 및 고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서류작업에 몰려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자가 직접 나서,
직원 및 고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안전이 필요한 모든 곳에,

AI 안전비서 **세이프버디**



「세이프버디」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카드

카드형식의 오늘의 안전업무 모아보기
진행중 / 완료 업무 구분을 통한 편리한 업무 관리



안전업무 알람&문서 자동완성

안전업무 마감기한 사전 알람을 통한 체계적 관리
계획 업무 / 상시업무 관리를 통한 안전업무목표 관리



안전버디톡

근로자&협력사 안전활동 참여
대화 회의록, 사진대지 채팅방 업로드로 문서완성

세이프버디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경영 ERP" 핵심기능 및 사용영역

- **사용처** : 국내/외 건설공사·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 근로자, 소규모사업장 및 소상공인 등
- **소비자층**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운영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전 업종 - **국내 83.7만개 사업장**)

안전한 사업장 관리

'본사'만의 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
 대시보드 / IoT관제 / 공지사항
 전사/현장 안전보건방침
 사업장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안전 조직 및 예산관리
 안전관리자 담당자 지정 및 선임계
 안전캘린더

모바일로 문서작성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활동 및 조치결과
 안전보건교육 / TBM
 월별안전보건예산 실적 관리
 근로자 안전문서/참가자 전자서명
 (카카오톡 SNS 활용)
 전자결재 기능

근로자 안전 참여

안전행사 기록 및 관리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아차사고 기록 및 관리
 근로자 안전제안/신고
 근로자 대상 설문/의견조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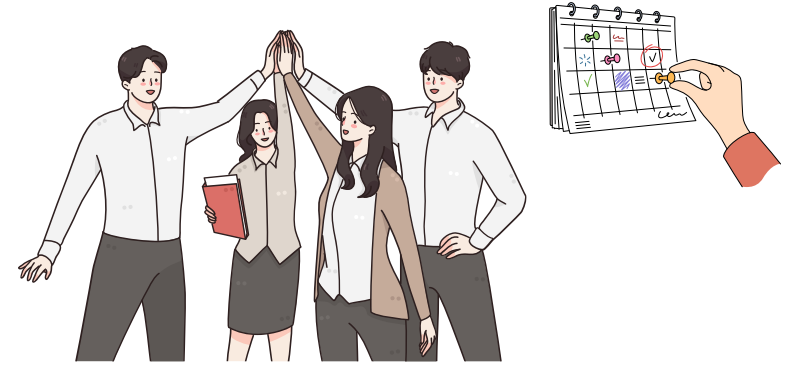
안전 NEWS 게시판 / 실시간 보도자료
 안전사고사례 / 재발방지대책 공유
 안전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자가진단 PROCESS

안전문서 출력/제본 및 보관

안전문서 Data 출력, 법정 보존기간 저장
 협력사 자가진단으로 안전평가 문서 제출

1 안전경영시스템 | 현장 원격 안전관리를 통한 표준화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술

적법한 기준과 시스템, 안전업무 표준 제시



안전한 사업장 관리

- '본사'만의 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
- 대시보드 / IoT관제 / 공지사항
- 전사/현장 안전보건방침
- 사업장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 안전 조직 및 예산관리
- 안전관리자 담당자 지정 및 선임계
- 안전캘린더

사업장명	사업장대표	자기안전 수준	업무목표	대시보드
본사	김사장 대표	-	67% 달성	보기
안전 이력시스템 개발 신축공사	최소장 소장	-	40% 달성	보기
공시본부 생츄얼 현장	생츄얼 소장	-	65% 달성	보기

사업장명	안전카드	담당자명	기준일자	유형
공시본부 생츄얼 현장	2024년 10월 특별 안전보건 교육	이민현	0=3	작성요청
공시본부 생츄얼 현장	2024년 10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이민현	0=3	작성요청
공시본부 생츄얼 현장	2024년 10월 위험성평가	이민현	0=6	작성요청

대표사업장 (ex. 본사)에만 제공되는 특별한 대시보드

항목	진행률	담당자	시작/종료
2024년 10월 특별 안전보건 교육	0=1	이민현	2024-10-06
2024년 10월 특별 안전보건 교육	0=1	이민현	2024-10-06
2024년 10월 특별 안전보건 교육	0=1	이민현	2024-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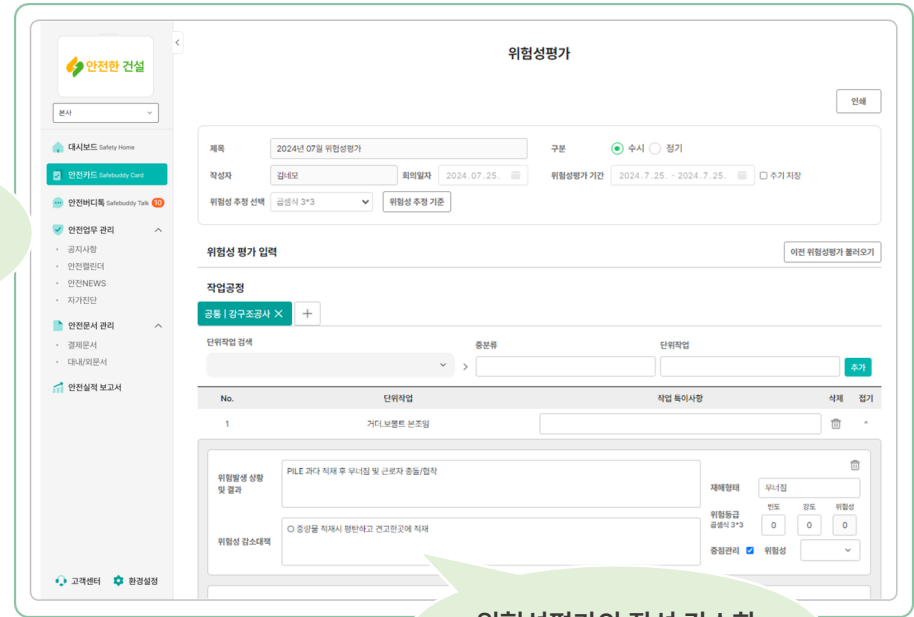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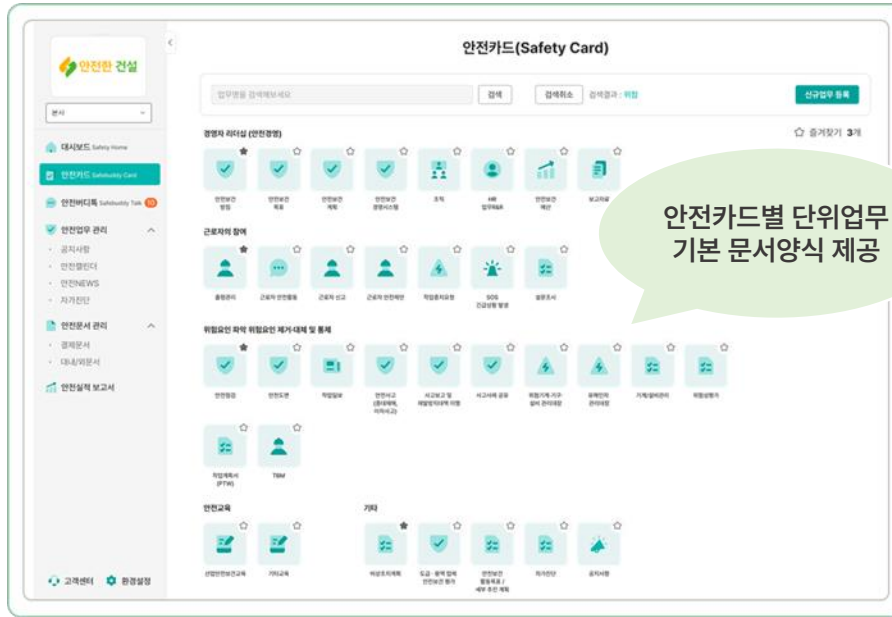
2 DX · 문서자동화 | 문서생성 기본값 완성, 이전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가속화&혁신화

문서작성 소요시간 제로화, 사업장 안전관리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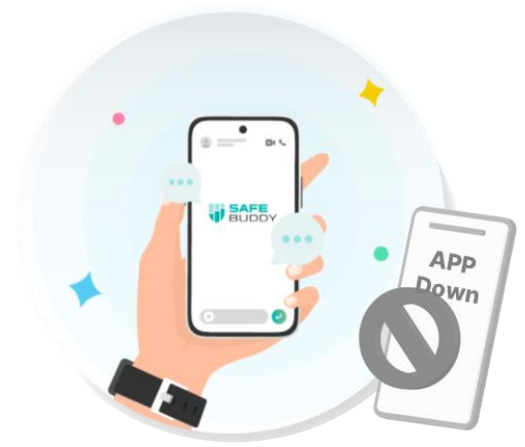
PC & 모바일로 문서작성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활동 및 조치결과
- 안전보건교육 / TBM
- 월별안전보건예산 실적 관리
- 근로자 안전문서/참가자 전자서명 (카카오톡 SNS 활용)
- 전자결재 기능



3 안전버디톡 | 카카오톡(SNS)을 통한 회원가입 및 세이프버디 접속, 손쉬운 안전활동 참여로 근로환경 안전 관리

디지털약자를 위한, 채팅방식의 문서작성 기술



근로자 안전 참여

안전행사 기록 및 관리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야차사고 기록 및 관리
 근로자 안전제안/신고
 근로자 대상 설문/의견조사

카톡을 이용한 시스템 접속



채팅방식의 문서작성 기능

4 BigData Crawling | 안전보건 영역의 실시간 정보 취합 및 시장환경 모니터링,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작동성 제공 및 완성



공공기관 보도자료 데이터 크롤링을 통한 실시간 이슈 공유

안전관리체계 구축 완성

안전 NEWS 게시판 / 실시간 보도자료
안전사고사례 / 재발방지대책 공유

안전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자가진단 PROCESS

안전문서 출력/제본 및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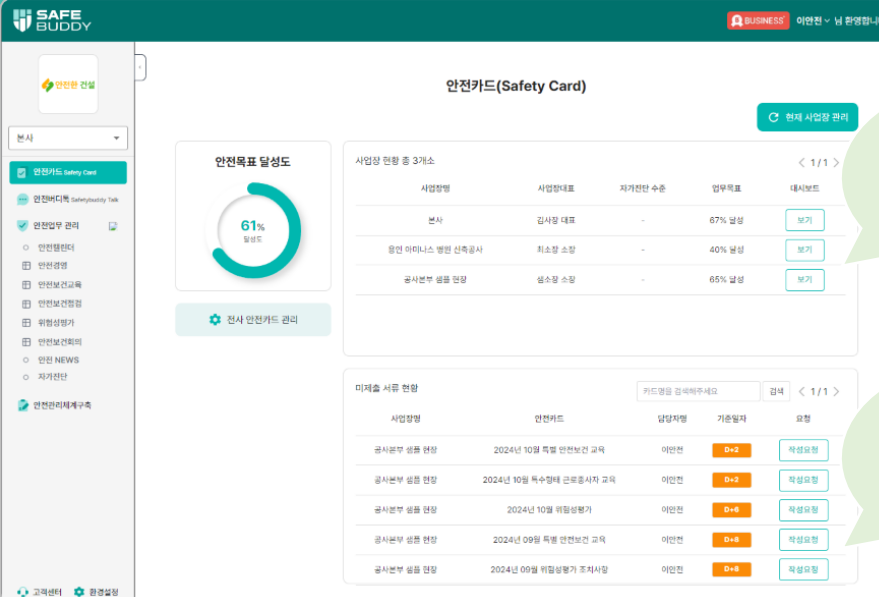
안전문서 Data 출력, 법정 보존기간 저장
협력사 자가진단으로 안전평가 문서 제출

안전카드 데이터 저장현황 분석에 따른 자가진단 평가 자동화

세이프버디 를 사용하면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변화가 ?

① 본사의 원격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별 안전관리 현황 모니터링, 사업장별 안전업무 이행실적 보고 및 작성요청 발송
- 사업장별 작성문서 모니터링, 사업장별 평가 및 개선



The screenshot shows the '안전카드(Safety Card)' dashboard.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with navigation options like '안전관리 현황', '안전관리센터', '안전경영',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회의', '안전 NEWS', and '자기진단'.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안전목표 달성도' gauge showing 61% completion. Below this is a table for '사업장 현황 중 3개소' with columns for '사업장명', '사업장대표', '자기진단 수준', '업무목표', and '대시보드'. The table lists three sites: '본사' (87% completion), '용인 미아니스 병원 건축공사' (40% completion), and '공시본부 생음 현장' (65% completion). At the bottom, there is a table for '미제출 서류 현황' with columns for '사업장명', '안전카드', '담당자명', '기준일자', and '요청'. It lists five entries for '공시본부 생음 현장' with specific dates and completion status (e.g., '2024년 10월 특별 안전보건 교육' is '이행전').

사업장별
안전목표 달성도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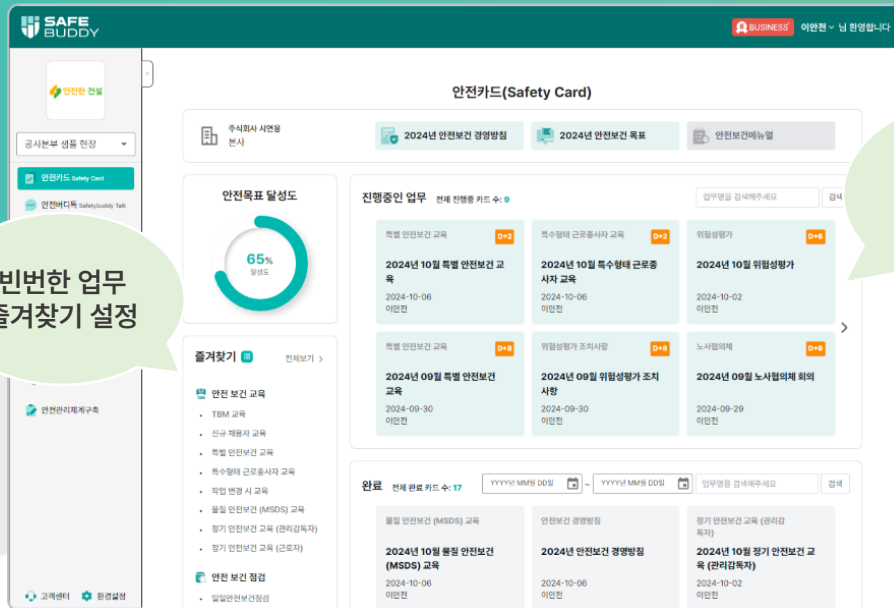
사업장별 미완료
안전카드 현황 및
작성요청 기능



세이프버디 를 사용하면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변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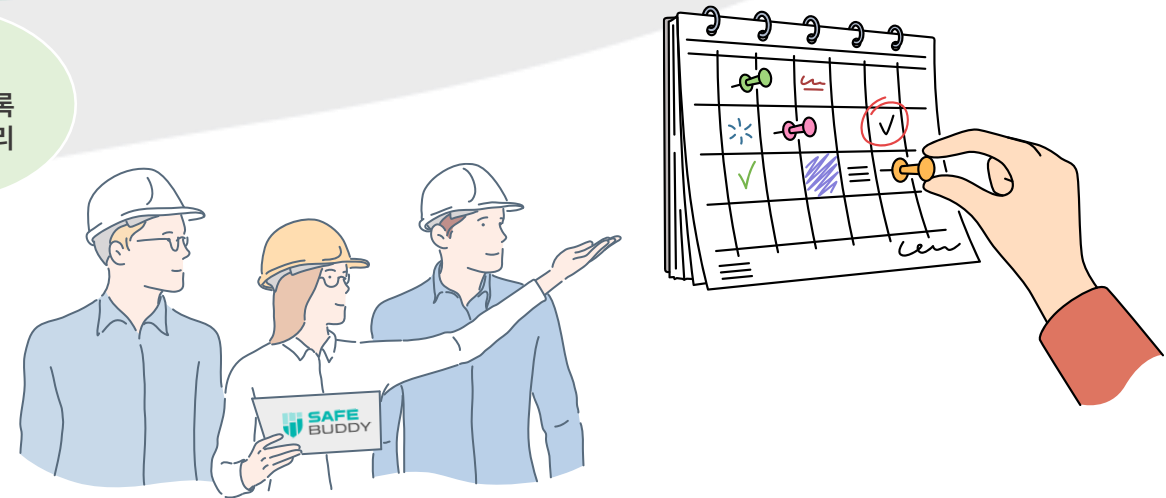
㉔ **안전업무 알람**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놓치지 않습니다.

- 안전카드(업무)마다 정해진 업무의 마감 기한 설정, 사업장별/개인별 미완료 업무 확인 및 캘린더 관리
- 주기적으로 빈번한 업무에 대해 즐겨찾기 설정을 통한 업무 간소화 및 자동화



빈번한 업무
즐거찾기 설정

진행중
안전카드 목록
안전목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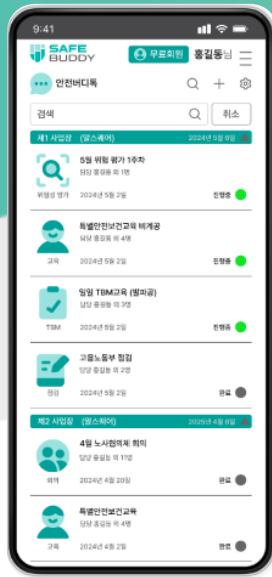


세이프버디 SAFE BUDDY 를 사용하면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변화가 ?

③ 협력사 및 근로자의 안전활동 참여가 편리해집니다.

- 안전카드와 안전버디톡의 연동으로 업무별 채팅방 초대(카카오톡), 챗봇 질의응답을 통한 업무별 안전문서 작성
- 채팅으로 의견 제시 및 회의록 문서 작성, 개인별 작성문서 관리 및 전자서명

카톡으로
시스템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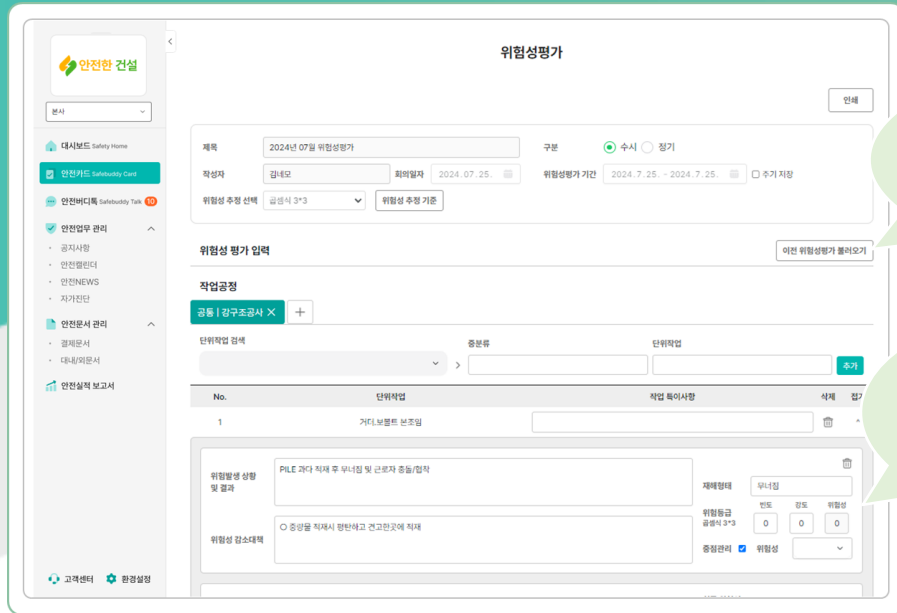
간편한 모바일
전자서명



세이프버디 SAFE BUDDY 를 사용하면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변화가 ?

④ 안전카드로 생성된 안전문서의 작성, 공유, 업로드 및 문서출력이 편리해집니다.

- 안전카드(업무)마다 안전문서 양식 설정, 완료된 안전업무에 대한 공유, 문서출력, 결재 가능
- 하드카피 문서의 사진촬영 및 스캔을 통한 간편 업로드



이전데이터(내용, 참석자정보)
불러오기 기능으로
간편한 문서작성 및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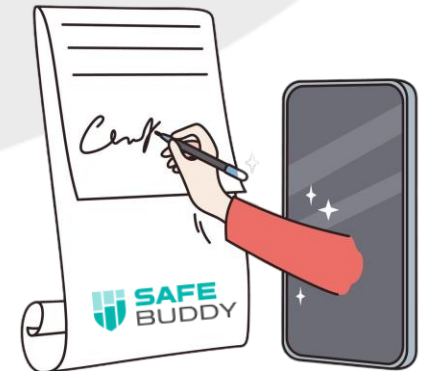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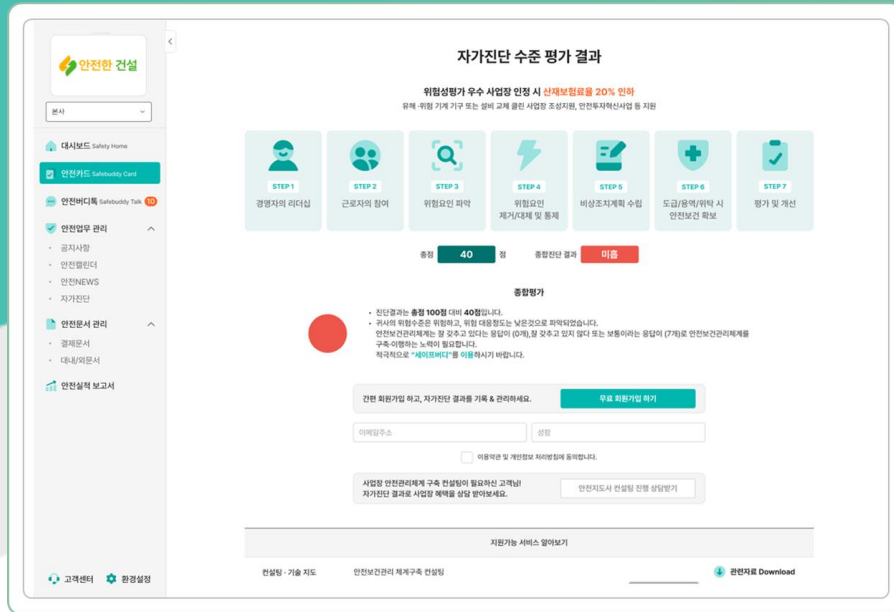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DB
위험요인 및 저감대책
(약 2만개 Data 보유)



세이프버디 를 사용하면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변화**가 ?

⑤ **경제적인 비용의 안전관리비 투자로, 표준화된 안전 업무를 알려드립니다.**

- AI 안전비서 세이프버디를 통해 적절하고 표준화된 업무목록 확인
- 산업안전관리비 투자로, 안전예산 집행 및 공사원가율 절약



스마트 안전보건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객사의 ESG경영 실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통합 솔루션

스마트 안전장비, 특정기능 위주의 S/W제품들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상용 솔루션

구독형 솔루션으로 초기부담 No, 유지관리 Yes

직접구축 시스템은 초기비용 및 유지관리에 큰 부담
매월 현장당 월이용료로 저렴하게 안전경영 운영가능

IT기술로 다양한 사업장의 다양한 현장 대응

현장단위의 특정솔루션이 아닌, 본사 중심의 통합관리 솔루션
모듈화, 고도화, 문서자동화, 안전관제플랫폼, 빅데이터

안전실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수준의 안전경영관리시스템을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안전경영 실무

“ 고객사의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요소 관리 및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

회원사 회원등급 및 서비스 안내


■ 회원사의 일반가입 유형 및 등급 (카카오톡 계정 가입 가능)

회원등급	서비스 이용 특징	안전카드	안전버디톡	문서최적화
 일반회원 무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회원은 세이프버디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 간편한 로그인 및 알림을 위해 계정을 카카오 톡과 연결하는 옵션 제공 회원사가 요청하는 안전문서 작성에 무료참여 가능 유료 회원사의 요청에 참여하여 작성한 문서목록 이력 관리 및 열람 가능 	X	협력사 근로자 ○	X
 BA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또는 단일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안전기본문서 및 최소 기능 제공 	○	○	X
 P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자가 존재하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원사에게 추천 (안전경영 ERP, 작성요청 발송 기능 등) 	○	○	X
 PART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의 제휴/협력사의 가입 유도를 통한 제휴 할인 및 사업장 모니터링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분야 협회, 재단 및 안전컨설팅 기관 등의 협력사 관리 Needs가 있는 회원사 추천 회원사 제휴코드 제공을 통한 별도의 로그인 시스템 구축 및 화면제공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창출 활롱 지원 	○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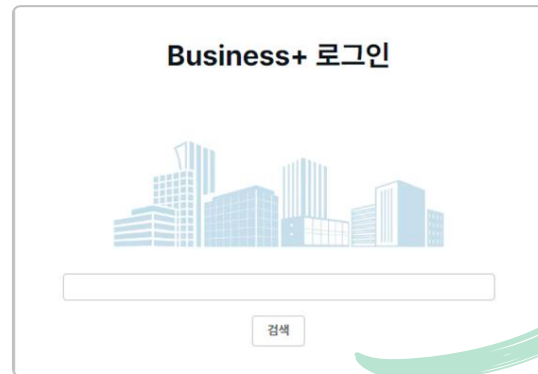
협력사 위험성평가 작성(PC), 회의, 점검, 교육 등 참석 전자서명

근로자 근로자 참여회의, 노사합동점검, 안전교육 등 참석 전자서명,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

■ Business+ 기업회원(Enterprise) 가입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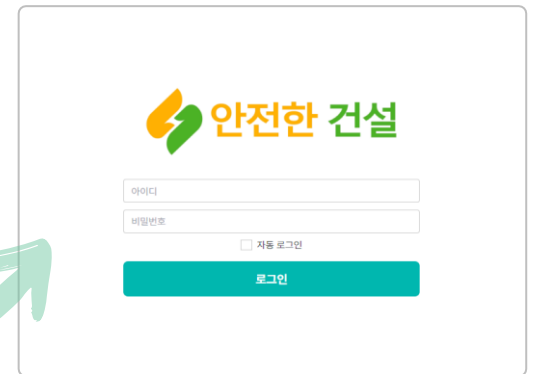
회원등급	서비스 이용 특징
 ENTERP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내에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갖추어져 있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제공하는 안전경영 ERP로서 세이프버디의 모든 기능 및 문서최적화 이용 가능 회원사용 코드 제공을 통한 별도의 로그인 시스템 구축 및 화면 제공 안전카드 및 안전버디톡 관련 기능 고도화 및 추가 시, 지속적인 서비스 추가 제공 데이터 관리: 직원 데이터는 회사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해 퇴사 시 안전하게 삭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직원 ID는 본사에서 생성 및 관리 (직원 퇴사 시 데이터 접근 불가) * 직원의 직접가입 및 카카오톡계정 연동 불가 (협력사 및 근로자는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참여 가능)

Business+ 회원만의 코드부여 및 제휴할인



*회원사 코드 입력 : " saf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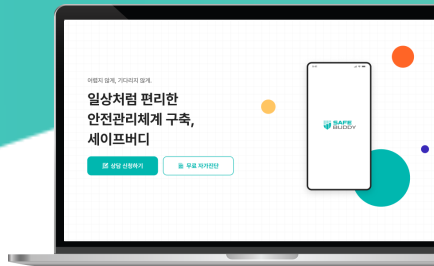
우리 회사/고객사만의 시스템 접속 환경 제공



*접속 주소 : www.safebuddy.co.kr/main/biz/s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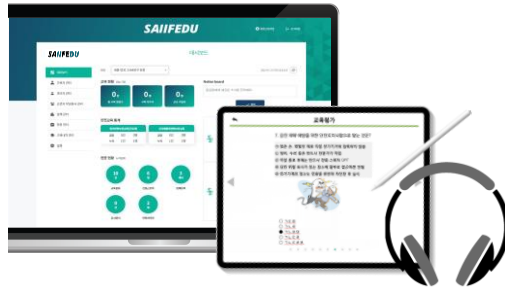


새임은 AI & IT 기술이 아니라, **안전**을 팝니다.



SAFE BUDDY
세이프버디

AI 안전비서 | 안전관리 통합 솔루션



SAIFEDU
세이프에듀

스마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중·대형 산업현장 교육 관리 기능 서비스]



안전명장
Safety Master

전사적 안전경영 ERP 플랫폼

[세이프버디의 구 VERSION]



SAIFEDU

일상처럼 편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새임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seiim.co.kr>

Corporate Name

주식회사 새임

Major Service

APP / WEB 개발, 스마트 안전솔루션

E-Mail

biz@seiim.co.kr

Official Site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43-12,
1층(서교동, 하임 HAIM)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안전관리 S/W를 사용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예산 투자 가능 여부
내용	<p>안녕하세요.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p> <p>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S/W 를 출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모든 메뉴는 건설현장 재해사고 발생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장 단위의 안전 DATA를 일목요연하게 수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영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교육관리가 편리해집니다.</p> <p>1. 해당 안전관리 솔루션인 세이프에듀와 세이프버디 서비스의 사용비(월별 구독료 & 현장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예산투자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번 9번 항목 중 몇 번 항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스마트안전장비와 같은 H/W가 아닌, S/W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p>
첨부 파일	서비스소개서(세이프버디, 세이프에듀)_새임.pdf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5-1097806
접수일시	2024-05-31 13:24:03
담당자(연락처)	유행현 (052-702-5015)
처리에정일	2024-07-10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7-03 17:10:3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이용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 2023-49호)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 S/W가 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입·임대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 S/W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동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제75조의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내에서만 가능)

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나, 건

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른 사용기준에 부합하며, 실제 그 기준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여부는 각 건설현장 상황 및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물품의 종류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담센터의 답변은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이나 처분보다 우선하지 않으므로,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추가 세부 문의는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용 용도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시거나 고용노동부 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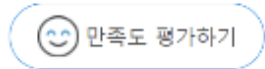
3.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담의 '기관소개'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담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유행현(052-702-50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10-03 17:10:30

점수 파일



갑지



수시 위험성평가

회사명	안전한 건설
사업장명	공사본부 생물 현장
회의일자	2024-10-13
평가기간	2024-10-13~2024-10-13

담 당 자					
일	/	/	/	/	/

+ 사진대지, 참석자명부

원도급사 위험성평가표

단위명	공사본부 생물 현장	담당자명	이재민	평가기간	2024년 10월 13일~2024년 10월 13일	회차일	2024년 10월 13일			
단위명	재해 형태	위험사항(요인) 발생원인 상황 및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현재/개선/안정조치)	가능성 (연도)	발생 빈도	중요 순위	중요관리 안전조치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담당자
낙하물위험성	추락, 낙하	낙하물위험성 설치, 제거 작업 중 추락	○ 낙하물 위장막 설치 또는, 해당 2인1조로 작업 ○ 안전대요리설 설치 후 안전조치 체결하고 작업	1	1, 2					
낙하물위험성	낙하	낙하물위험성 설치시 지점으로 작업 중 낙하물 세 의한 사고	○ 낙하물위험성 설치 및 제거작업을 공사현장 사전 협의하여 작업에 진행	1	2, 3					
낙하물위험성	추락, 낙하	낙하물위험성에 달린 낙하물 등 제거작업을 위해 안전조치 작업 중 추락	○ 낙하물위험성 상행 장소 등 작업시 안전용 자갈 등 사용하여 작업한다	2	2, 4					
낙하물위험성	낙하	스프링에 낙하 등 비안전행위자가 설치 시 작업이 낙하물 발생	○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전 장비 및 작업을 점검, 작업방법, 안전교육	0	0, 0					
낙하물위험성	낙하	간헐적으로 파손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	○ 2중충격저항을 실시하고, 사용 용량까지 조정, 확인 후 재작업 시 안전에 이상유무 확인상시, 안전 현상 유무로로 살펴본다	1	1, 2					
낙하물위험성	낙하	작업 시 물줄기 방향 미준수에 의한 추락사나 낙하물 위험	○ 2중충격저항을 실시하고, 사용 용량까지 조정, 확인 후 재작업 시 안전에 이상유무 확인상시, 안전 현상 유무로로 살펴본다	1	2, 3					
낙하물위험성	낙하	정지 상태에서 접근구간이 미안전으로 출입 근 용차 낙하물에 위험	○ 낙하물 발생구간 차 부 접근구간에 상행 및 물 접근금지 실시, 상행유시 작업금지	3	3, 6, 0		작업방법 변경	3	2024-09-30	이재민
낙하물위험성	낙하	일 인양 작업 중 후크 제거장치 파열로 인한 낙하물 위험	○ 후크 제거장치 설치 및 제거용량 수서 확인, 낙하물 발생구간 차 부 접근구간에 상행 및 물 접근금지 실시, 상행유시 작업금지	3	3, 6, 0		제거장치 교체	2	2024-09-30	이재민
비계 설치 작업		비계설치를 할때도 2인1조로 작업하거나 물줄기를 점검 검토하여 비계 설치유무로 점검	○ 기둥에 비계가 연결된 안전 물줄기로 검토하여 조여서 체결	2	3, 5					
비계 설치 작업	도리	비계기를 안전이 넘어 운영중에서 비계와 비계 연결로 도리 위험	○ 비계기를 안전이 넘어 운영중에서 1.5~1.8m, 단 안전장치는 1.5m 이하로 설치	4	2, 6, 0		도리장치설치 설치	2	2024-09-30	정지석 권지영 최

협력사A 위험성평가표

단위명	협력사A	담당자명	홍길동	평가기간	2024년 10월 13일~2024년 10월 13일	회차일	2024년 10월 13일			
단위명	재해 형태	위험사항(요인) 발생원인 상황 및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현재/개선/안정조치)	가능성 (연도)	발생 빈도	중요 순위	중요관리 안전조치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담당자
표면 처리 작업	낙상, 찰과상	Chemical 취급시 내장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화상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 부인장, 방한복, 방한장갑, 안전안경)	0	0, 0					
표면 처리 작업	충돌, 찰과상	PEL 취급 중 주변 근로자에게 충돌 위험	○ 인후에 보호구 착용 및 작업현장내 거울설치, 안전경 착용, 안전안경 내 용량금지	0	0, 0					
표면 처리 작업	낙상, 찰과상	그리퍼의 미안전행위 결과로 손 부상	○ 그리퍼의 안전장치를 설치	0	0, 0					
표면 처리 작업	낙하	누출로 근접작업 중 웨이어로터의 파손으로 인한 누출로 낙하	○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전 장비 및 작업을 점검, 작업방법, 안전교육	0	0, 0					

협력사B 위험성평가표

단위명	협력사A	담당자명	홍길동	평가기간	2024년 10월 13일~2024년 10월 13일	회차일	2024년 10월 13일			
단위명	재해 형태	위험사항(요인) 발생원인 상황 및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현재/개선/안정조치)	가능성 (연도)	발생 빈도	중요 순위	중요관리 안전조치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담당자
표면 처리 작업	낙상, 찰과상	Chemical 취급시 내장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화상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 부인장, 방한복, 방한장갑, 안전안경)	0	0, 0					
표면 처리 작업	충돌, 찰과상	PEL 취급 중 주변 근로자에게 충돌 위험	○ 인후에 보호구 착용 및 작업현장내 거울설치, 안전경 착용, 안전안경 내 용량금지	0	0, 0					
표면 처리 작업	낙상, 찰과상	그리퍼의 미안전행위 결과로 손 부상	○ 그리퍼의 안전장치를 설치	0	0, 0					
표면 처리 작업	낙하	누출로 근접작업 중 웨이어로터의 파손으로 인한 누출로 낙하	○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전 장비 및 작업을 점검, 작업방법, 안전교육	0	0, 0					

감지

+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석자명부

안전한 건설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제목	2024년 10월 노사합동안전점검		
점검일시	2024-10-13 (09:00 - 10:00)		
점검자	이안전	점검/조치	2건 / 2건

합동안전-보건점검표

중합사항	
중요 지적사항	- 이동식 플비계 설치 기준 미준수 - 개인보호구 미착용
시정조치 결과 (예정)	- 보안경 착용 후 작업 실시 - 플비계 난간대 설치 후 작업 실시 - 발판 상부 합판 설치
기타 사항	-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해당일에 즉시 조치 완료 - 주요내용 : 1) 화재사고 예방 점검 2)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관리자 의견	- 오피스 현장 특성상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작업기준 미준수에 대해 신규교육 및 아령 조화시 수시 교육 필요
현장관리자 의견	- 현장내 위험 요인 중 사다리 작업시 추락 위험, 용접 및 컷팅 작업시 화재 위험이 가장 높기때문에 철저하게 안전관리 필요

이전 Data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한 문서내용 자동 완성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합동안전-보건점검표

연번	점검항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1	개인보호구의 적정 지급 및 착용(사용)상태	-	
2	정리,정돈 및 청소 상태	1건	1건
3	안전통로 확보 상태(계단,경사로,주동로)	-	
4	개구부 방호조치 상태(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표지판 등)	1건	1건
5	추락위험구역 방호조치 상태(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표지판 등)	-	
6	낙하물방지 조치 상태 및 이상 유무 (낙하물방지망설치,단부 및 고소에 자재방치)	-	
7	예방조치의 적정성 (비상대피로,소방자재함,용접안전수칙,간이발판 등)	-	
8	일발판 및 사다리사용의 적정성 (B/T비계, 간이작업발판,달대비계,사다리 등)	-	
9	감진재예예방을 위한 조치 적정성 (분진반사건조지,잡지,누전차단기 사용,진선피복 손상유무,절연조치 등)	-	
10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적정성 (동근동,연삭기,용접기,산소용접장치 등)	-	
11	위험물 관리의 적정성 (보관장소지정,표지판 부착,소화기 비치,관리책임자 지정 등)	-	
12	양중장비 및 인원수송 장비의 적정성 (T/C,HOIST,이동식크레인,곤도라,원지 등)	-	
13	도목가시성,굴착구배,사면안정,흙막이 배면의 안전성,지반침하,도로 안전시설,신호수배지 여부	-	
14	기타 지적 사항	-	

사진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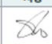


점검항목 #2-1

점검내용(개선 전)	조치결과(개선 후)
 <p>정리정돈 상태 미흡</p>	 <p>정리정돈 완료</p>
<p>점검내용</p>	<p>조치내용</p>



점검항목 #4-1

점검내용(개선 전)	조치결과(개선 후)
 <p>안전난간대 설치 미흡</p>	 <p>안전난간대 설치 완료</p>
<p>점검내용</p>	<p>조치내용</p>

참석자 명부

사업주 대리인				근로자			
NO	소속 및 직책	성명	서명	NO	소속 및 직책	성명	서명
1	주식회사 세임 안전관리자	성주필		1	협력사A 근로자 대표	근로자1	
2				2	협력사B 근로자 대표	근로자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점검사진

	
--	--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를 구분하여 초대